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	-----	-----	----------

제출방법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 서면

신청인	상호(명칭)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정보	전자우편주소
	취급시설 소재지		
관할지방환경 관서 : () 유역(지방)환경관서 / ()합동방재센터			

신청내용	제출구분	☐ 신규제출 ☐ 재제출 ☐ 5년 재제출 ☐ 부적합 후 재제출 ☐ 이행점검 부적정 재제출	
	사업장 구분	☐ 1군 사업장 ☐ 2군 사업장	
	영업허가 대상	☐ 영업허가 대상 ☐ 면제대상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 여부	☐ 해당 ☐ 미해당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생략 대상	☐ 안전성향상계획 ☐ 공정안전보고서 ☐ 미해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서 통보
신청인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인